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 127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06일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함. 대부분의 신체적 폭력이 언어폭력에서 시작되고 이러한 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사회를 점점 폭력적으로 변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언어순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강남의 한 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사제간에 신뢰와 존경심을 회복하고 친구들 간에도 다툼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존댓말을 사용하는 언어순화운동을 인천시 전체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통한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언어순화운동은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다. 참가대상을 교직원, 학생, 학부모로 하고 학교의 장은 동의를 받은 후 참가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존댓말 사용 등 실천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참여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학교 시상 및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ssg109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제 출 자   | 해당사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 고 |
|---------|------|-----------|-----|
| ○ 주 소 : |      |           |     |
| ○ 성 명 : |      |           |     |
| ○ 연락처 : |      |           |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언어순화 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매우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가정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의 교직원과 계약직 교원 및 학교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학부모"란 제5호에서 정의한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언어순화운동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 아니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 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4조(기본원칙)**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학생·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동참여)**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참여대상의 동의를 받은 후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및 가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계획수립)**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

2. 참여대상에 대한 연수 계획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참여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언어순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언어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개최

**제10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div data-bbox="427 322 791 367">▣ 초·중등교육법</div> <div data-bbox="453 400 751 441">제2조(학교의 종류)</div> <div data-bbox="453 470 804 510">제19조(교직원의 구분)</div> <div data-bbox="427 607 791 651">▣ 건강가정기본법</div> <div data-bbox="453 685 633 725">제3조(정의)</div> <div data-bbox="721 754 1110 799">“세부내용 별지 작성”</div>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

# 관계법령 발췌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생 략”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은 교육감이 언어순화운동에 대해 연수, 홍보 및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에 대해 교육감이 연수, 홍보를 하거나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박 순 남 의원